

상속세 계산 구조와 증여 설계, 10년 합산 점검

회계법인 리파인드

상속증여플랜 제안서

작성일 2026. 11. 2.

REFINED
회계법인 리파인드

T. 02-516-3830 | E. admin@refinedacc.com | W. refinedacc.com



01

서비스 개요

같은 10억 원 증여도 10년 안이냐 밖이냐에 따라 세액이 2.75억 원 달라집니다

검토 결론

재산 50억 원, 자녀 2명 가정의 모의 계산입니다. 10억 원 증여 10년 후 합계 세액이 17.9억 원에서 15.15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증여 후 가치가 그대로이면 10년 안의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가산되어(상증법 §13①1호) 절감이 없습니다.

성립 조건 4개

1
증여 시점
상속인 10년, 그 밖의 자 5년 이전 증여

2
증여 신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내

3
공제 한도
과세가액에서 가산 증여 등을 뺀 공제 한도가 5억 원 이상

4
납부 재원
세액 납부 자금과 연부연납 담보 준비

이런 분께

- ✔ 자녀에게 증여를 시작하려는데 시점이 고민인 분
- ✔ 상속세를 계산해 보고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한 분
- ✔ 배우자공제를 최대로 쓰는 것이 맞는지 의문인 분
- ✔ 상속세 납부 자금이 부족해 연부연납을 알아보는 분

서비스 범위와 진행 단계

1 현황 진단	재산 목록, 가족관계, 최근 10년 증여 이력을 모아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나오는 상속세를 먼저 계산합니다. 이 금액과 한계세율이 비교의 기준입니다.
2 안 비교	증여 대상, 금액, 시기를 바꾼 안 2~3개를 같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에서 증여세액공제를 뺀 총세액으로 비교하고 추천안과 사유를 적습니다.
3 신고·재원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과 납부 방법을 일정표로 만듭니다. 연부연납 담보로 낼 수 있는 재산과 물납 요건 충족 여부도 이때 확인합니다.
4 사후 점검	증여 이력은 상속 때 10년 또는 5년 합산 대상입니다. 증여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재산이 바뀔 때마다 계산을 갱신합니다.



02

상속세 계산 구조

과세가액, 공제, 세율, 10년 합산의 순서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안의 증여를 더한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빼고 5단계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증여세도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쟁점은 증여 시점, 합산 기간, 공제 한도, 증여 때와 상속 때 적용될 한계세율의 차이입니다.

도해 1. 상속세 계산 순서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납부세액
재산 - 채무 등 + 10년 내 증여		기초·인적·배우자 등, 한도 §24		과세가액 - 상속공제 §25		10%~50%, 5단계 §26		증여세액공제 §28, 신고 3% §69

납부세액 = 세율표 적용(재산 - 채무 + 10년 내 증여 - 공제) - 세액공제

모의 계산입니다. 재산 총 50억 원, 자녀 2명, 배우자 없음, 일괄공제 5억 원을 가정합니다. 증여 없이 상속하면 과세표준 45억 원, 세액 17.9억 원입니다. 자녀 1명에게 10억 원을 증여하고(증여 후 가치 불변) 10년이 지난 뒤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세 2.25억 원, 상속세 12.9억 원(과세표준 35억 원)으로 합계 15.15억 원입니다. 10년 안에 상속이 개시되면 10억 원이 다시 가산되어 합계가 17.9억 원으로 같아집니다. 신고세액공제와 감정수수료는 뺐습니다.

근거: 상증법 §13①, §25, §26, §28①, §53, §56. 증여세 2.25억 원 = 과세표준 9.5억 원 기준 9천만 원 + 4.5억 원 x 30%

도해 2. 상속세와 증여세 비교

두 세목은 세율표가 같고 공제와 기한이 다릅니다.

항목	상속세	증여세
세율	1억 원 이하 10%에서 30억 원 초과 50%까지 5단계입니다(§26).	상속세와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56).
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와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21①). 배우자는 최저 5억 원입니다(§19④).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이고 혼인·출산 1억 원은 별도입니다(§53, §53의2).
합산	상속인 증여는 10년, 그 밖의 자 증여는 5년 안의 것을 더합니다(§13①).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가 1천만 원 이상이면 더합니다(§47②).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는 9개월입니다(§67).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68①).
연부연납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입니다(§71②1호 나목).	일반 증여재산은 허가일부터 5년입니다(§71②2호 나목).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 등)에게 증여하면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되고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입니다. 자녀가 사망해 그 자녀의 자녀가 받는 대습 증여는 제외입니다(§57①).



03

실행 전에 확인하는 항목 6개

하나라도 어긋나면 세액이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01 합산 기간과 대상자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 등에게 한 증여는 5년 안의 것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손자녀가 상속인이면 10년입니다. 가산액은 증여일 현재 가액입니다(§60④).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 증여는 5년이면 빠지지만 증여세에 30%(미성년 20억 원 초과 40%)가 가산됩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기간을 잘못 잡아 합산 대상이 되거나 할증을 빼고 증여세를 적게 추정합니다.

근거: 상증법 §13①1호·2호, §57①, §60④

02 증여재산공제 소진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한도입니다.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배우자 6억 원이고,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 원을 별도로 공제합니다(혼인 전후 2년, 출생·입양 후 2년). 공제는 먼저 한 증여부터 차감하므로 매년 나눠 증여해도 10년 안이면 합산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증여해도 직계존속은 배우자까지 합산합니다. 증여 횟수를 늘려도 공제는 늘지 않습니다.

근거: 상증법 §47②, §53, §53의2①~③, 시행령 §46①1호

03 상속공제 종합한도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 가산한 사전증여재산(받은 공제 차감)을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 사전증여분은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을 때 적용됩니다. 자녀만 상속인이고 남은 재산 3억 원에 가산 증여 10억 원(공제 5천만 원)이면 과세가액 13억 원, 한도 3.5억 원이라 일괄공제 5억 원을 다 못 씁니다.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면 일괄공제는 안 됩니다.

근거: 상증법 §24 1~3호, §21①②

04 배우자 분할기한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이며,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배우자 사전증여분 과세표준 차감)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은 공제합니다. 5억 원 초과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등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분할심판 청구 등 부득이한 사유를 그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심판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신고할 수 있습니다(소송·심판 외 사유는 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놓치면 5억 원만 공제됩니다.

근거: 상증법 §19①~④, 시행령 §17②③

05 납부 재원과 담보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고 담보를 내야 허가됩니다. 국세징수법 §18①1~4호 납세담보를 내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기간은 일반 상속재산 10년, 일반 증여재산 5년이고 각 회분은 1천만 원을 넘어야 하며 각 회분에 가산금이 붙습니다(§72). 물납은 상속세에만 있고 요건 3개(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2분의 1 초과, 세액 2천만 원 초과, 세액이 금융재산 초과)를 모두 갖춰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으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증법 §71①②, §72, §73①, 시행령 §69

06 사망 전 인출과 증여 소명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재산 종류별 2억 원 이상,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을 처분·인출하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가 1년 안 2억 원, 2년 안 5억 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도 같습니다(§15①2호).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처분·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그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이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시행령 §11④). 예를 들어 8억 원을 인출하고 5억 원을 입증하지 못하면 1.6억 원을 뺀 3.4억 원이 산입됩니다. 자녀에게 간 돈을 증여로 소명해도 상속인이면 10년 가산 대상입니다. 신고기한은 증여 3개월, 상속 6개월이고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고 거짓·누락 신고는 그 부분만 15년입니다.

근거: 상증법 §15①, §67, §68, 시행령 §11④, 국세기본법 §26의2④



04

판정 순서와 일정

질문 5개와 기한 5개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증여 실행부터 상속 신고까지 기한

증여일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68①). 신고하면 할증 포함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합니다(§69②).

증여 후 5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증여는 5년이 지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습니다(§13①1호).

증여 후 10년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10년이 지나면 가산되지 않습니다(§13①1호). 증여재산공제도 10년이 지나면 새 한도를 씁니다(§53).

상속 후 6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입니다(§67①④).

신고기한 후 9개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등기해 신고합니다. 소송·심판이 사유이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입니다(§19②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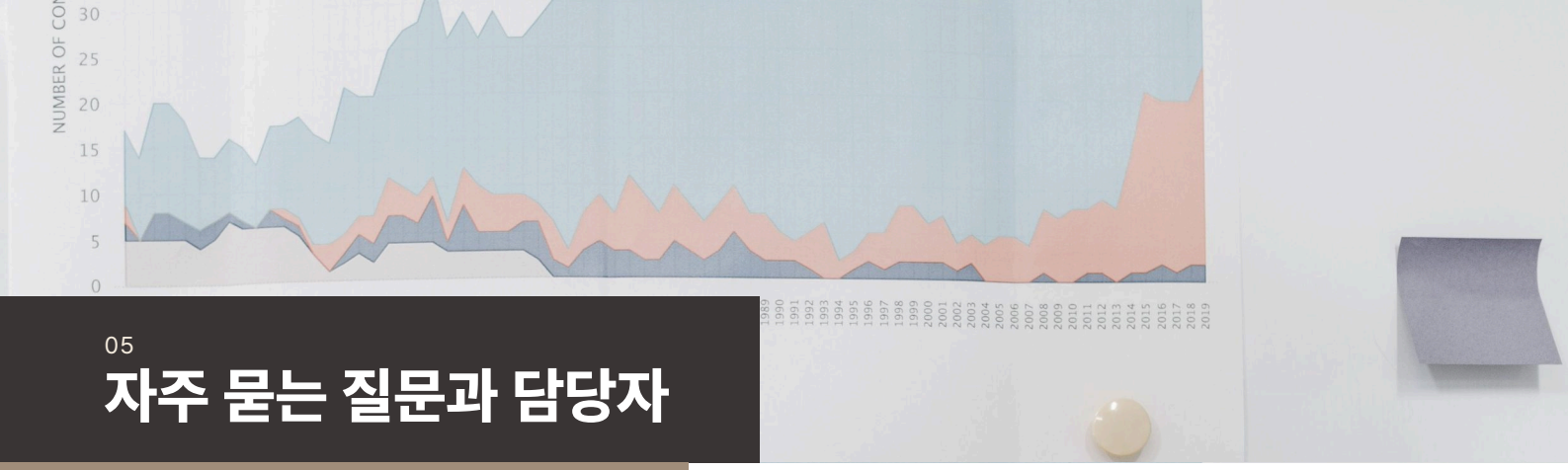
도해 3. 판정 순서

확인 질문	판정 기준
1. 증여 시점이 합산 기간 밖인가	상속인은 상속개시 전 10년, 그 밖의 자는 5년 밖이면 가산되지 않습니다(§13①). 기간 안이면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고(§28①), 절감은 증여 후 오른 가치에서 나옵니다. 가산액은 증여일 시가이고(§60④), 시가는 거래가액·감정가격 등이며 산정이 어려우면 §61~§65 방법으로 평가합니다(§60②③).
2. 증여 세율이 상속 때 세율보다 낮은가	증여세와 상속세는 같은 세율표(§26, §56)를 씁니다. 증여 과세표준의 한계세율이 상속 때 예상 한계세율보다 낮을 때 실익이 있습니다. 앞의 모의 계산은 30%와 50%입니다.
3. 상속공제 한도가 줄지 않는가	가산 증여가 있고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그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24 3호). 남은 재산이 작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몫을 기한 안에 분할할 수 있는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과 등기가 되어야 5억 원 초과 공제가 됩니다(§19②④). 상속인 간 합의 가능성을 생전에 확인합니다.
5. 납부세액을 낼 재원이 있는가	연부연납(상속 10년, 증여 5년, 담보 제공)은 두 세목에 모두 있습니다. 물납은 상속세에서 요건 3개를 모두 갖출 때만 신청합니다. 부족한 금액은 별도 재원 계획이 필요합니다(§71, §73).

보수

보수는 재산 규모와 증여 대상자 수를 확인한 뒤 상담 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착수 전에 업무 범위와 보수를 서면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05

자주 묻는 질문과 담당자

문의는 대표번호로 받습니다

Q1. 증여 후 얼마가 지나야 상속세에 합산되지 않나요?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0년 안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13①1호).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입니다(§13①2호). 가산액은 증여일 현재 가액이고(§60④),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28①). 다만 공제액은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으로 한도가 있습니다(§28②).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거나, 제척기간이 끝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증여는 증여세액공제가 없습니다(§28①).

상증법 §13①, §28, §60④

Q2. 증여받은 부동산을 곧바로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건물을 양도일부터 소급해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취득한 때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낸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들어갑니다(소득세법 §97의2①). 다만 이 특례를 적용한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으면 특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97의2②3호).

소득세법 §94①1호, §97의2①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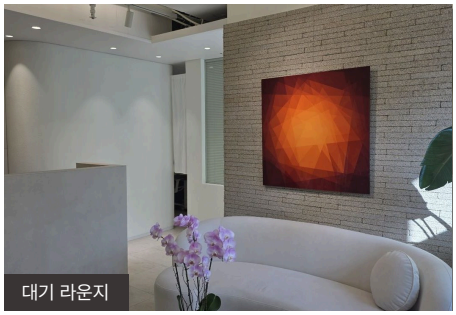
Q3. 배우자에게 최대한 상속하면 세금이 가장 적은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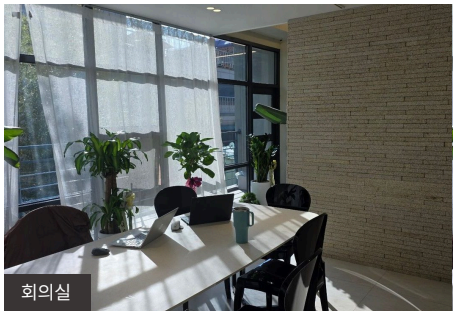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이고,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19①). 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은 공제됩니다(§19④). 한도 안에서 기한 안에 분할·등기하면 배우자 몫이 늘수록 1차 상속세는 줄어듭니다. 다만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2차 상속 때 상속재산이 됩니다. 1차에서 줄인 만큼 2차 과세표준이 커져 두 번의 합계가 늘 수 있어 1차와 2차 세액을 합산해 비교합니다. 분할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19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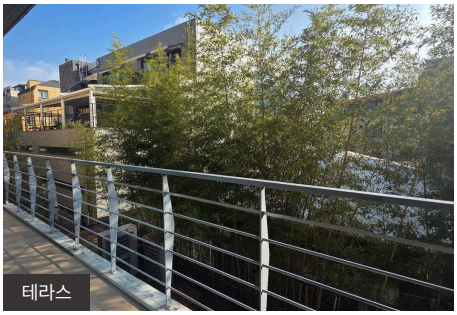
상증법 §19, §26

담당 회계사

이름	직위	전문 분야
이종헌	대표 회계사	가업승계·상속증여, 법인 구조 설계, 세무조사 대응, 기업가치평가
임연희	부대표 회계사	법인 조세 업무, 중소·중견기업 세무 자문
이현우	파트너 회계사	세무조정, 세무조사 대응, 경정청구, 세무진단
장하리	이사 회계사	세무조정, 세무자문, 개인 재산제세 업무
김윤경	이사 회계사	K-IFRS·US-GAAP 감사, 투자회계, 파생상품 위험회피회계 검토
박광종	세무사 고문(세무법인 엑스퍼트 소속)	국세청 약 40년 근무, 조사·징세·부가가치세 업무


대기 라운지


회의실


테라스

T. 02-516-3830 | F. 0507-1790-1496 | E. admin@refinedacc.com | W. www.Refinedacc.com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40길 18(크레아빌딩) · 지하철 신사역·논현역에서 각각 도보 5분

상담 내용은 공인회계사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세율·기한은 2026년 11월 2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